

# 목 차

주주총회소집공고.....	1
주주총회 소집공고.....	2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	4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4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4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4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4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	5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5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5
III. 경영참고사항 .....	6
1. 사업의 개요.....	6
가. 업계의 현황 .....	6
나. 회사의 현황 .....	8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10
<input type="checkbox"/> 이사의 선임.....	10
<input type="checkbox"/> 감사의 선임.....	11
<input type="checkbox"/> 정관의 변경.....	12

# 주주총회소집공고

2017년 04월 04일

회 사 명 : (주)서화정보통신  
대 표 이 사 : 정 봉 덕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부림로 170번길 41-13 (관양동,서화빌딩)  
(전 화) 031-345-5100  
(홈페이지) <http://www.seohwa.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정봉덕  
(전 화) 031-345-5100

# 주주총회 소집공고

(임시주주총회)

1. 일 시 : 2017년 4월 20일(금) 오전 09시 00분

2. 장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0번길 41-13 서화빌딩 1층  
[4호선 평촌역 하차 (3번출구 방향 평촌스마트스퀘어첨단산업단지 내)]

3. 회의 목적 사항

가. 부의안건 :

- 제 1 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 제 1-1호 의안 :사내이사 장푸(Zhang Pu)

# 제 1-2호 의안 :사내이사 예마오창(Ye Maochang)

# 제 1-3호 의안 :사내이사 치엔위진(Qian Yujin)

- 제 2 호 의안 : 감사선임의 건(상근감사 1명)

- 제 3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등의 비치

상법 제 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지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명의 개서 대행회사(국민은행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증권회사에 주권을 위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또는 불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뜻을 주주총회 회일의 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 하셔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이면의 의결권행사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 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나. 전자투표행사 전자위임장수여기간 : 2017년 4월 10일 ~ 2017년 4월 19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 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 임

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 증권범용  
인인증서 공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주총회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주총회참석장, 주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참석장은 위임장이 아님)

#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A (출석률: %)	B (출석률: %)	C (출석률: %)	D (출석률: %)
			찬 반 여 부			
-	-	-	-	-	-	-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	-	-	-	-	-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	-	-	-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 1. 사업의 개요

##### 가. 업계의 현황

###### (1) 산업의 특성

통신 산업은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산업으로 전세계적으로 통신서비스 시장은 10%내외의 성장을 하고 있으며, 유선서비스 보다는 무선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순차적으로 국제전화사업, 시외전화사업, PCS, 무선데이터 통신 등에 신규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무한경쟁에 힘입어 1990년부터 2006년까지 연평균 약 16%의 증가율로 성장해왔습니다. 이동전화서비스 시장은 1997년 PCS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면서 이동전화의 일반대중에게 급속히 확산되었고 시장규모 또한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성숙기에 들어선 2000년대 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 주가하락, 과당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2010년 이동통신 전체 가입자는 5천만명을 돌파하여 국민 1인당 1이동전화 시대가 열렸으며 특히 스마트폰 가입자와 태블릿PC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1인 多모바일기기 시대가 열리면서 이동통신 시장의 새로운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통신산업은 급격한 기술발전과 서비스이용자의 수요변화 등으로 인하여 통신과방송융합, 유무선 통합 등 컨버전스 환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통신과방송 융합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휴대인터넷(WiBro) 등의 신규서비스 등과 최근 국내이동통신 사업자들간의 3G서비스(WCDMA) 및 3.5G서비스(HSDPA), 4G서비스(LTE)의 공격적인 서비스망 확대 등으로 통신시장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무선통신사업자간의 인수 및 합병과 신성장 서비스 진출 등으로 통신방송융합, 유무선 통합 등의 컨버전스 환경으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든 지금도 통신장비 업체에게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중계기 산업은 무선통신산업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통화품질의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인 기지국을 대체 및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지국은 투자비용이 막대하여 국가 경제적으로 저비용 대체재인 중계기의 실익이 인정되고 있으며, CDMA 및 WCDMA, WiBro시스템의 선두국가로서 앞선 기술력과 원가 경쟁력으로 해외 진출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국가적인 수출산업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 산업의 성장성

국내 정보통신산업은 2000년에 들어 23.2%의 눈부신 고도 성장을 이루었으나 2001년 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이동통신사업자의 과당경쟁과 투자감소 및 WCDMA 등 차세대서비스의 상용화가 지연되면서 관련 업체들도 성장의 침체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동통신 사업자의 CDMA 시설투자가 일단락 되면서 중계기 수요는 급속히 감소하였으며, 통합망구축과 업그레이드, 이동통신사업자간의 합병에 따른 통합형중계기의 수요증가, 번호이동성제도의 시행에 따른 일시적인 시장규모의 확대가 있었으나 대부분 일회적인 성격의 것으로 시장규모를 확대시키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통신기술의 발전과 이용자의 수요변화 및 통신 사업자간의 신규 서비스 선점 경쟁 등에 힘입어 3G 비동기식 WCDMA/HSDPA 및 동기식(EVDO 리비전A),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휴대인터넷(WiBro), 4G(LTE) 등 차세대 서비스를 위한 장비투자가 본격화됨과 동시에 정부차원의 'IT839'전략 등의 지원과 정책이 이어지면서 통신장비시장에 새로운 전

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는 13년도말 추가 주파수 공급 마련을 위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2.0"을 확정하여 2023년까지 4단계에 걸쳐 1GHz폭이상의 주파수를 회수, 재배치, 할당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7월 국회에서 700MHz대역의 할당안을 방송용(UHD) 30MHz 와 이동통신용으로 40MHz폭, 나머지는 국가재난망 등 공공통합 망과 용도간 보호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모바일 광개토 플랜2.0" 계획에 맞춰 700MHz, 1.8GHz, 2.1GHz, 2.6GHz 등 총 4개대역 140MHz폭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하반기 이후 경매를 통해 이동통신사에 할당할 계획입니다. 먼저 8월에는 제4이동통신 허가신청접수와 함께 제4이동통신으로 우선 배정해 놓은 FDD방식의 2.6GHz 와 TDD방식의 2.5GHz 주파수 역시 할당공고를 내고 경매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유무선통신사업자들의 인수합병, 신성장 서비스 시장 진출 등으로 통신 사업자간의 신규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이로 인한 통신방송융합, 유무선통합등의 컨버전스 환경으로 전환되고 있고, 지속적인 사업자간의 경쟁 및 새로운 돌파구 모색을 위한 인한 신기술, 신서비스 개발의 가속화로 IPTV, 인터넷전화(VoIP)등과 같은 TPS/QPS(Triple/Quadruple Play Service)등의 결합서비스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 (3) 경기변동의 특성

통신기기 및 방송기기 시장은 성숙기에 접어든 시장으로서 시장포화에 따른 성장이 둔화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기술의 발전과 이에 따른 새로운 수요를 위한 통신사업자의 신규서비스 및 음영지역 해소와 통화품질개선 등을 위한 통신장비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무선 통신 사업자간의 합병에 따른 통신방송융합, 유무선통합등의 다양한 서비스는 포화 상태인 통신시장에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경기가 계속 침체될 경우에는 통신 사업자의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당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 (4) 경쟁요소

통신기기 및 방송기기는 고도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기술 및 Know-how, 그리고 고가의 시험 측정 장비가 부족한 업체는 신규진입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도의 신뢰성 및 안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품질이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동통신사업자들은 투자계획에 따라 중계기부문의 투자가 단기간에 집중되는 투자특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생산능력과 기술개발능력, A/S능력을 갖춘 소수의 업체를 선정하여 자사모델의 독점공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5) 자원조달상의 특성

통신기기 및 방송기기의 주요 원재료로는 수동회로부품(예 : 저항기, 콘덴서, 인덕터, 발진기 등), 기구적전자회로부품(커넥터, 동축커넥터, 릴레이, 스위치 등), 전원회로부품(트랜스, 방열기, 서미스터 등), 반도체부품(IC류, FET/MMIC 트랜지스터 등), RF FILTER(세라믹, 캐비티, SAW등) 및 기구물 등이 있는데 이들 원재료의 대부분은 안정적인 가격 및 납기로 국내 공급이 가능하며 일부 반도체부품의 경우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환율변동의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우리나라는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와 전파법 제46조 및 제57조에 의거,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통신기기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는 형식승인, 형식검정 또는 등록을 받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각국은 안전, 보건, 환경, 소비자보호 등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강제적인 기술규제를 정의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WTO 회원국간에 상호인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약



정서를 체결하여 상대국 적합성평가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마크 등을 상호 인정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나. 회사의 현황

###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 (가) 영업개황

당사는 1996년 SK텔레콤에 디지털이동전화용 중계기를 공급한 이래로 통신기기와 방송기기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연구개발형 벤처기업입니다. 당사는 무선통신시스템 (Cellular, PCS, TRS)용 중계기를 통신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주요 고객으로는 이동전화사업자인 SK텔레콤, 주파수공용통신사업자인 케이티과워텔, 디지털지상파방송사업자인 KBS를 비롯한 각 방송사 등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본격적으로 차세대 서비스인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DMB), 휴대인터넷(WiBro), WCDMA/HSDPA, LTE, 광대역LTE-A 등의 서비스가 본격화 됨에 따라 3G중계기 및 2G/3G공용 중계기, LTE 중계기, AP 등의 개발 및 공급을 하고 있으며 중계기전문기업으로써 신규 수요 차세대중계기의 개발과 적극적인 시장 대처로 매출다변화 및 시장점유율 확대에 전력투구 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중심의 무선 데이터 사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무선 Data Traffic 증가로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무선 데이터 중심 네트워크로 진화를 서두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동통신 중계기 시장은 3G에서 LTE(4G) 서비스로의 이동, 아이폰, 갤럭시S시리즈 등 스마트폰 사용자의 확대에 따른 무선 Data Traffic 증가로 인하여 설비투자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선 데이터 통신 수요 증가는 기존 통신망의 과부하, 음성 서비스 장애 등의 유발로 기존 WCDMA/LTE망 용량 확대 및 커버리지 확장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LTE 상용화 서비스가 전국망으로 확대되면서 VoLTE 및Multi-Carrier 등의 서비스 확대에 따른 통화품질 향상 및 13년도 8월말에 확정된 주파수경매결과에 따른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주파수재배치 완료와 LTE 전국망 서비스 확대 등으로 국내 이동통신 중계기 시장은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외 이동통신 중계기 시장은 무선 데이터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WCDMA 와 LTE 등의 신규 이동통신 서비스의 확대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동통신 망 커버리지가 부족한 해외 통신사업자들에게 DAS, ICS 등 중계기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미국, 일본, 유럽 등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일본내 통신사업자에게 인빌딩 광중계기인 DAS 장비를 상품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 (2) 시장점유율 등

이동통신 중계시스템 제조업체로는 쏘리드, 씨에스, 암니스, 기산텔레콤, 삼지전자, 에프알텍 등이 있으며, 전체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동종계열의 기업간 고객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객관적인 시장점유율 산정이 어렵습니다.

#### (3) 시장의 특성

국내 대표적인 이동통신 사업자는 SK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등이 있으며 2001년도

를 기점으로 CDMA투자이후 이동통신시장의 포화상태, 신규서비스 관련 설비투자지연 등으로 다소 주춤하였으나 기존에 설치되었던 장비들의 교체주기가 돌아오고 이동통신사업자들의 WCDMA/HSDPA 및 WiBro, LTE 등의 신규서비스 경쟁과 더불어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DMB) 사업의 시작으로 이동 및 휴대방송의 서비스 시장 뿐만 아니라 콘텐츠, 기기, 솔루션, 응용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시장상황을 보면 국내 이동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 엘지유플러스, 케이티는 2014년도에 LTE-A를 세계최초로 상용화 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기존 LTE-A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광대역 LTE-A'를 상용화하여 1.8GHz 대역의 20MHz 폭 광대역 LTE주파수와 800MHz 대역의 10MHz 폭 LTE주파수를 묶는 캐리어어그리케이션(CA) 기술을 적용해 최대 225Mbps 속도를 구현하였으며, 이는 기존 LTE보다 3배, 3G 보다는 15배 빠른 속도입니다. 또한, 2015년도 초에 국내 이동통신 3사는 2014년도 '광대역 LTE-A' 상용화 에 이어 기존 LTE(롱텀에볼루션)보다 4배 빠른 '3밴드 LTE-A 서비스'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였습니다. '3밴드 광대역 LTE-A'는 3개 대역 주파수묶음기술(CA)을 적용해 최고 300메가비트 (Mbps)의 속도를 구현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LTE의 4배, 3세대(3G)보다는 21배 빠른 것으로 1GB 영화 한편을 28초만에 내려받을 수 있는 속도입니다.

제 이동통신 속도가 1Gbps를 넘어서며 5세대(G) 이동통신 시대로 점차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7월, 처음으로 LTE가 상용화된 지 4년만입니다.

1Gbps 속도에서는 18기가바이트(GB) 초고화질(UHD) 영화 1편을 내려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2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같은 영화를 현재 최고 4G 이동통신 네트워크인 '3밴드 LTE-A'에서 내려받으려면 8분이 걸립니다. 5G 시대가 오면, 같은 영화를 10초 만에 내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가급 이통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은 이중 망 묶음기술, 혹은 이중 망 동시전송 기술이라고 하는 '멀티패스 TCP'(Multi-Path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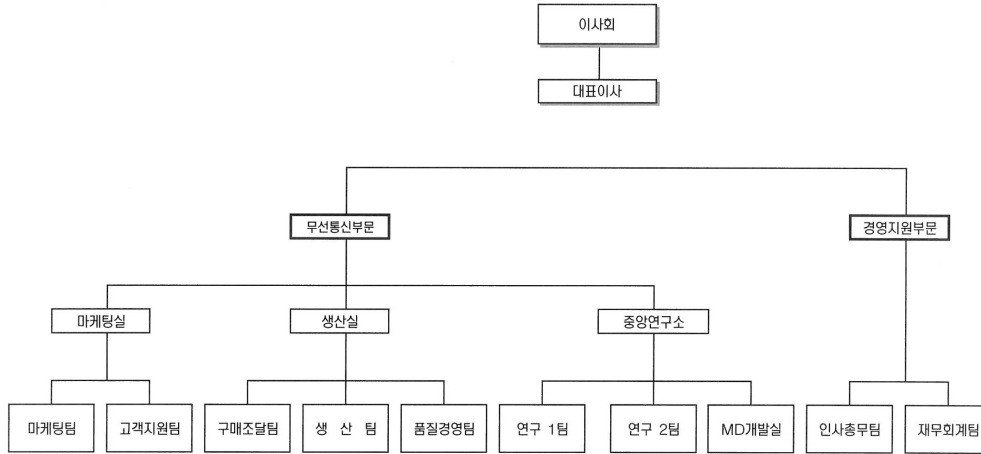
이중 망 묶음기술은 서로 다른 망, 즉 LTE 이통 망과 와이파이(Wi-Fi) 망을 묶어 하나의 통신망처럼 활용해 속도를 높이는 기술입니다. 최고 속도 300Mbps의 '3밴드 LTE-A'와 최고 속도 866.7Mbps의 기가 와이파이를 묶어 최고 1.17Gbps의 속도를 내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이 서비스는 3밴드 LTE-A와 기가 와이파이 장비가 동시에 설치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현재 이중 망 묶음기술로 더욱 빠른 무선인터넷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사마다 서비스명은 '기가 LTE'(KT), '밴드LTE와이파이'(SK텔레콤), '기가 멀티패스'(LG유플러스)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없음]

#### (5) 조직도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장푸 (Zhang Pu)	1982.07.19	아니오	없음	이사회
예마오창 (Ye Maochang)	1973.06.30	아니오	없음	이사회
치엔위진 (Qian Yunjin)	1980.01.27	아니오	없음	이사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장푸 (Zhang Pu)	-청두 Skymoons의 부총재.	-중국사천대학 졸업 -상하이Shanda Interactive 청두R&D센터 기획 담당 -청두영롱과기유한공사 R&D총감 -적월과기 CEO	해당없음

<p>예마오창 (Ye Maochang)</p>	<p>-상하이 유상과기유한회사 총경리</p>	<p>-화동컴퓨터기술연구소 컴퓨터조직 및 체계구조, 석사 -상하이락유정보기술유한회사 총경리 -상하이기원과기주식유한회사 파트너</p>	<p>해당없음</p>
<p>치엔위진 (Qian Yunjin)</p>	<p>-중국 Wei Heng Lawfirm의 Partner 변호사</p>	<p>-화동정법대학 법학석사 -상하이중위투자자문유한회사, 상하이하이얼의료과학기술유한회사, 아이스톤인재서비스(상하이)회사, 난광(상해)국제여행사유한회사(중앙국유기업), 아오유웨이회사, 상하이로란음악학교, 상하이절대가인, 상하이바우정물류주식유한회사, 상하이설계의도, 홍콩평마유한책임회사 연간법률고문 -즈방자산유한책임회사, 상하이경청투자관리주식유한회사, 과학교 등 법률고문 -핑안대건강주식유한회사의 입고변호사 -전국중소기업주식양도시스템(썬산반)상장업무 법률서비스(상하이제성통신과학기술주식유한회사, 상하이바우정물류주식유한회사, 라오닝중하이강생물제약주식유한회사, 라오닝마이디생물과학기술주식유한회사, 텐진더통전기주식유한회사, 상하이어우후정보인터넷유한회사, 푸젠난평방화과학기술유한회사) -신민자본, 딩이, 텅원자본의 불량자산처리 및 ABS업무 참여중</p>	<p>해당없음</p>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	------	-----------	-----

멍쿤(Meng Kun)	1981.04.12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현재)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멍쿤(Meng Kun)	청두Skymoons 부총재	-University of Waikato (New Zealand) 컴퓨터과 학과 석사 -적월과기 BD	해당없음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2조(목적)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34. (생략) 35.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및 파생사업	제 2조(목적)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34. (생략) (현행과 같음) 35. 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 36. 정보통신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 37. 상표, 브랜드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업 38. 저작물 창작 등에 대한 공인 매니저업 39. 영화 및 영상 등 제작업 40. 연예 매니지먼트 관련 서비스업 41.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및 파생사업	- 사업목적 추가
제 10 조(신주인수권) ① ~ ④ (생략) ⑤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8의 규정에서 정하는 가격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 10 조(신주인수권) ① ~ ④ (생략) (현행과 같음) ⑤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 단서조항 삭제

<p>제 14 조의 2(전환사채의 발행) ①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② ~ ⑤ (생략)</p>	<p>제 14 조의 2(전환사채의 발행) ①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1. ~ 5. (생략) (현행과 같음)</p> <p>② ~ ⑤ (생략) (현행과 같음)</p>	<p>- 제3자대상 발행 사채의 액면총액 증액</p>
<p>제 15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② ~ ⑤ (생략)</p>	<p>제 15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1. ~ 5. (생략) (현행과 같음)</p> <p>② ~ ⑤ (생략) (현행과 같음)</p>	<p>- 제3자대상 발행 사채의 액면총액 증액</p>
<p>제 27 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p>	<p>제 27 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①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p> <p>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는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관의 변경</li> <li>2. 주식의 분할</li> <li>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li> <li>4. 영업의전부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도</li> <li>5. 등기임원의 해임</li> <li>6. 액면미달의 주식발행</li> <li>7. 기타법령이 정하는 사항</li> </ol>	<p>-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을 ②항에 추가</p>
<p>제 29 조(이사의 수) ① 당 회사의 이사는 3명이상으로 한다.</p>	<p>제 29 조(이사의 수) ① 당 회사의 이사는 3명이상 7명이하로 한다.</p>	<p>- 이사의 수 상한 설정</p>
<p>제 34 조(이사의 직무) ① ~ ② (생략)</p>	<p>제 34 조(이사의 직무) ① ~ ② (생략) (현행과 같음)</p> <p>③ 회사 및 자회사의 대외투자, 처분, 용자, 거래에 대하여는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p>	<p>- 사전 이사회 승인 안건 추가</p>
<p>제 41 조의2(감사의 수와 선임) ① ~ ② (생략)</p> <p>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p>	<p>제 41 조의2(감사의 수와 선임) ① ~ ② (생략) (현행과 같음)</p> <p>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 단서조항 삭제</p>

부칙(2016.03.18) 제49조(시행시기) 이 정관은 제2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4.20) 제49조(시행시기) 이 정관은 제28기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7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